

## 2021년도 제1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(수의 7급)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

2021년도 제1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(수의 7급)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1년 2월 3일

전라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

### 1. 선발예정인원

직급	직렬	직류	선발예정인원	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	비 고
7급	수의	수의	32명	순천 2, 광양 1, 곡성 4, 구례 2, 고흥 1, 보성 3, 화순 2, 장흥 2, 해남 1, 영암 3, 무안 1, 함평 2, 영광 1, 진도 3, 전라남도 4	

※ 임용예정기관별로 구분 모집하며, 임용예정기관별 응시자를 대상으로 서로 경쟁하여 합격자를 결정함.

### 2. 시험방법 및 일정

#### 가. 시험방법

##### ○ 1차 시험 : 서류전형

- 응시자가 임용예정 직위의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

##### ○ 2차 시험 : 면접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항목을 상·중·하로 종합평가

▶ (평정항목)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
▶ (평정방식)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등을 토대로 질의·응답

-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
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
(‘상’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, ‘상’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‘중’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)

#### 【 불합격 기준 】

- ①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‘하’ 평정
- ②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항목에 대하여 ‘하’ 평정

### 나. 시험일정

시험공고	응시원서 접수기간	시험구분	시 험 일	합격자 발표일
'21. 2. 3.(수)	'21. 2. 24.(수) ~ 3. 3.(수)	서류전형	'21. 3. 10.(수)	'21. 3. 11.(목)
		면접시험	'21. 3. 19.(금)	'21. 3. 24.(수)

- ※ 합격자 발표 : 전라남도 누리집(홈페이지) 시험정보(<http://hamdo.jeonnam.go.kr/sihum/>)에 게시
- ※ 면접시험일 및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
(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)

## 3. 응시자격(판단기준일 : 최종(면접)시험예정일)

### 가. 응시자격 :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

\*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일(면접시험일)까지 유효해야 하며, 면허 취득 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일(면접시험일)까지 취득하여야 함

### 나. 응시연령 : 20세 이상(2001. 12. 31. 이전 출생자)

### 다. 거주지 · 성별 : 제한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※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(외국인이 아닌 자)

### 라. 응시결격사유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, 제66조(정년)에 해당되지 아니하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응시자격이 정지되거나 응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## ○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 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거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 ○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(정년)

-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

## ○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

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
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을 하는 행위
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
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  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  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- **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**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1. 공공기관
 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## 4. 근거법령

- 가. 지방공무원법(법률 제17894호, 2021. 1. 12.)
- 나. 지방공무원 임용령(대통령령 제31380호, 2021. 1. 5.)
- 다.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(행정안전부 예규 제126호, 2020.9.22.)
- 라.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(전라남도 규칙 제3244호, 2020.12.31.)

## 5. 임용예정일,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

- 가. 임용예정일 : 2021. 3~4월 중(예정)      ※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
- 나. 채용기간 : 지방공무원법 제66조(정년)을 적용함
- 다. 보수 :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거 지급

## 6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- 가. 원서교부 : 별지1~4호(내려받아 사용)
- 나. 접수처 : 전라남도청 총무과 인재채용팀(행정동 8층)
- 다.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제출

※ 코로나-19 예방을 위해 도청출입이 제한되오니 가급적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-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(3.3.)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
- 우)58564,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(전라남도청) 총무과 인재채용팀  
※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곁표지에 '수의7급 응시원서 재중' 표기
- 우편 접수자의 경우,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, "응시표"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
- 우편접수 시, 응시수수료(우체국 통상환증서)는 제출서류와 동봉

## 7. 응시자 제출서류

- 가. 응시원서(별지 제1호 서식) 1부(응시수수료 : 7,000원)
- 응시원서에는 임용예정기관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.  
※ 응시수수료는 **전라남도 수입증지**(전남도청 1층 농협에서 판매), 우편 접수시는 **우편통상환(우체국에서 판매)**으로 대체(**대한민국 수입인지 사용불가**)  
※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.
- 나. 이력서(별지 제2호 서식) 1부
- 다. 자기소개서(별지 제3호 서식) 1부
- 라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별지 제4호 서식) 1부
- 마.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

## 8. 유의사항

- 가. 전라남도인사위원회 및 전라남도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
- 나.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- 다. 응시원서에 집 전화, 휴대폰 번호 등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하며,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라. 응시원서에는 임용예정기관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.
- 마. 응시원서 등에 기재착오 및 누락,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바.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시험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에 따라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.
- 사. 임용예정기관별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종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,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아. 본 공고문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전라남도 누리집(홈페이지)에 변경 공고합니다.

❖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청 총무과 인재채용팀(061-286-3371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